



September 18, 2009

동 간행물은 삼일회계법인의
세무자문그룹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세무뉴스레터로 국내세법
개정 및 입안 과 조세행정제도,
정책 및 법규 관련 최신 동향과
선별된 최신 예규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2)

예규판례

-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세액공제 여부
- 현물출자방식으로 신설된 법인이 면제받은 사업용재산의 취득·등록세의 추징 여부
- 합병전 수출한 물품의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받은 외화 수출대금의 외화차입금 상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2)

9월 3일자 Tax News Flash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골자, 즉 R&D 세액공제, 저탄소 녹색성장 세제 지원, 기업인수합병세제 선진화 및 대법인 최전한세 강화 등을 일차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들에게 관심 있을 만한 개편안 내용을 추가로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금년 말 정기국회 심의 통과 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요건 완화

현재 지분을 2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예정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임.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을 유인하는 효과가 예상됨.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이슬람채권은 발행구조가 일반 채권과 달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여부가 불명확함.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할 예정임.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물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 면제함.

이자라(Ijara)와 무라바하(Murabaha) 구조를 이용하여 발행한 이슬람채권을 세제지원대상으로 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세제지원 대상으로 함.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내국법인이 직접 새로운 유형의 증권인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근거가 없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개선

현행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2개의 과세특례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09년 일몰)후 일반 소득세 과세체계 적용, ② 총급여액에 대해 15% 단일세율 적용) 중 선택 적용 허용.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제도(①)를 폐지하고 15% 단일세율 제도(②)만 유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 합리화: 현재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간 50% 감면으로 축소하고 '11.12.31 까지 2년간 일몰 연장함.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 한정하고 있으나 증자 시에도 적용 계획임.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등 감면기간 확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이전 시에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되,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하며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 예정임.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 확대하고 수도권 인접지역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 시에는 현행처럼 7년간 세제지원 유지함(5년간 100%, 2년간 50%)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

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할 예정임. 지식기반산업은 ①엔지니어링사업, ②부가통신업, ③연구개발업, ④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⑤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⑥전문디자인업, ⑦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⑧광고물작성업을 포함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전자상거래설비,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 적용하고 있음.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 추가 예정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교부의무사업자에 추가 '11.1.1 이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분화함.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는 교부내역을 전송기한인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미전송 가산세(관련 공급가액의 1%)를 부과. 미전송 가산세를 전송기간별로 세분화(1% → 0.5%, 1%) 하여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는 0.5%,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함. 시행시기는 2010.1.1 이후 시행함.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대

현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출자가 과표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하도록 하여 과표를 노출시키는 제도임.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예정임. 신청기간을 물품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거래금액 상한을 폐지하여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 예정임. 또한 월 2건 이내의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 예정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적용 예정임.

연결납세 적용을 위해서는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 필요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서 업종별로 사업연도를 강제(금융지주·은행 12월, 증권·보험 3월, 상호저축·대부업 6월)하고 있어 임의 조정이 불가능.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를 자법인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할 계획임. 적용 요건은 ① 법령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고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하거나 ② 법령 등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 확인이 강제되는 경우임.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할 계획임.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내역, 해외자회사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세회피 방지에 미흡한 실정임.

최신 예규판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241, 2009.7.3.)

현물출자방식으로 신설된 법인이 면제받은 사업용재산의 취득·등록세의 추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세 종과대상 물건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등을 고려해 볼 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용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및 제116조 제9항에서 "합병"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지방세운영-3013, 2009.7.28.)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1142, 2009.8.13.)

공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받은 외화 수출대금을 외화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미리 받아 원화로 환가지 아니하고 외화차입금의 상환 또는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1122, 2009.8.11.)

세액감면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같은조 제6항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265, 2009.5.28.)

동 뉴스레터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평소 교류가 있는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 팀이나 아래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영	709-0557	jylee@samil.com
오일환	709-0897	ihoh@samil.com
이동건	709-0561	dklee@samil.com
이정민	709-0788	jmlee@samil.com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강신중	709-0578	sjkang@samil.com
전한준	3781-3489	hjcho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Samil Academy Programs

2009년 10월의 교육프로그램

재무제표분석실무 2009년 10월 6일 (화) ~ 2009년 10월 9일 (금), 4일간 총 24시간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기업부실징후 분석기법, 계정과목에서 전체 재무제표까지 체계적인 분석기법

지방세 실무 2009년 10월 6일 (화) ~ 2009년 10월 9일 (금), 4일간 총 24시간

지방세 감면제도와 중과세제도 및 절세대책, 지방세법 핵심내용 및 쟁점별 집중분석과 최신 예규·판례, 부동산 관련 지방세 법령

원천징수실무 2009년 10월 6일 (화) ~ 2009년 10월 9일 (금), 4일간 총 24시간

원천징수 관련 각종 세무서식 작성요령, 법인세 및 소득세법의 기본개념과 각 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해설,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해설과 사례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2009년 10월 6일 (화) ~ 2009년 10월 9일 (금), 4일간 총 28시간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에 대한 핵심사항과 세무조정사항 등

신입사원경리실무(야간) 2009년 10월 7일 (수) ~ 2009년 10월 23일 (금), 8일간 총 24시간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실무, 원가·관리회계 및 세무회계에 대한 기본개념

법인세실무 2009년 10월 12일 (월) ~ 2009년 10월 16일 (금), 5일간 총 31시간

실무 중심의 최신 예규, 국세심판 사례, 대법원 판례 해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분석

부가가치세 핵심 포인트실무 2009년 10월 13일 (화) ~ 2009년 10월 13일 (화), 1일간 총 7시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등 실무상 유의해야 할 예규와 판례의 사례

재무회계입문 2009년 10월 13일 (화) ~ 2009년 10월 15일 (목), 3일간 총 21시간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회계의 흐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복식부기의 원리, 전표작성에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회계 Cycle에 대한 학습

원가관리회계시스템 구축운용 및 진단실무 2009년 10월 13일 (화) ~ 2009년 10월 15일 (목), 3일간 총 21시간

원가관리방안 및 원가절감요인, 원가관리시스템 진단 및 활용 및 운용 사례

세무조사대책실무 2009년 10월 16일 (금) ~ 2009년 10월 16일 (금), 1일간 총 7시간

주요 조사방법과 내용의 숙지를 통한 절세전략, 조사대상의 선정과정 및 주요 세목별 조사사례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해설 2009년 10월 19일 (월) ~ 2009년 10월 21일 (수), 3일간 총 21시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 차이점, 구분기장의 원리 및 출연재산 사후관리의 이해 수익사업의 회계처리방법 및 법인세 신고실무

특수회계실무 2009년 10월 19일 (월) ~ 2009년 10월 22일 (목), 4일간 총 27시간

파생상품회계, 지분법, 연결회계 등 특수회계 주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 및 사례연구

삼일 IFRS School 2009년 10월 28일 (수) ~ 2009년 10월 30일 (금), 3일간 총 18시간

국제회계기준(IFRS)과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주요 주제별 국제회계기준(IFRS) 소개 및 국제회계기준(IFRS) 실무사례

위의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무, 그리고 사례 연구 등 실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과정은 제외) 교육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 02-3781-3429로 하시기 바랍니다.